

## 조례 번호 2024-01

### 수도 공급 중단 정책을 개정하고 조례 2022-01을 폐지하는 조례

#### 퓨리시마 힐스(PURISSIMA HILLS) 수도 관리국

**한편**, 2022년 7월 13일에 수도관리국은 캘리포니아 정부법 섹션 60370 등, 캘리포니아 공익사업법 섹션 10001 등, 보건 안전법 섹션 116900 등에 따른 수도관리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수도 공급 차단 및 연체된 고객 계정과 관련하여 조례 2022-01을 채택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수도관리국이 조례 2022-01을 채택하였을 때, 보건 안전법 섹션 116906은 연체 계정을 가진 고객에게 연불 계획, 납부금 삭감, 대체 납부 일정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수도관리국에 부여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상원법안 3(2023)은 고객의 의학적 또는 재무적 상태와 무관하게, 수도관리국과 같은 커뮤니티 수도 공급 기관이 납부금 연체로 인하여 수도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고객에게 연불 계획, 납부금 삭감, 대체 납부 일정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도록 보건 안전법 섹션 116906(a)를 개정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수도관리국은 상원법안 3 및 보건 안전법 섹션 116906(a)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례 2022-01을 개정하길 원합니다.

이에 따라, 퓨리시마 힐스(PURISSIMA HILLS) 수도 관리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 **섹션 1. 주택 수도 공급 서비스 요금 납부.**

수도관리국으로부터 수도를 공급받는 사람은 명세서 또는 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관리국은 적시에 전체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도 공급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도관리국은 대상 계정이 60일 이상 연체하지 않는 한 요금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수도관리국은 주말, 휴일 또는 수도관리국이 영업을 종료한 후에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 **섹션 2. 납부 요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고객이 수도관리국이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였거나, 공급되지 않은 수도 공급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billing@purissimawater.org](mailto:billing@purissimawater.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주소: 26375 W. Fremont Road, Los Altos Hills, CA 9402으로 우편을 발송하여 명세서 또는 청구서를 받은 후 십(10)일 이내에 수도관리국으로 통지함으로써 청구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도관리국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평가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총괄 관리자는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고, 적절한 경우, 당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청구 금액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고객이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총괄 관리자의 결정 후 칠(7) 일 이내에 상기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여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정기 이사회 회의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 정기 이사회 회의가 총괄 관리자의 결정 후 삼(3) 일 이내에 개최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회의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사회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 **섹션 3. 수도 공급 서비스 중단 통지.**

수도관리국은,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고객 및/또는 실제 사용자에게 요금 연체 및 임박한 서비스 중단을 통지합니다.

### **섹션 4. 수도 공급 서비스 중단의 방지.**

수도 공급 서비스의 고객 및/또는 실제 사용자는 (650) 948-1217번으로 수도관리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요금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옵션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연불 또는 납부금 삭감 계획, 대체 납부 일정 또는 연체 요금의 분할 상환 합의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대체 납부 옵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관리국은 수도관리국의 단독 재량에 따라, 고객의 납부 옵션을 결정하고 해당 납부 옵션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재납부 옵션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미납부 잔액을 완전히 납부해야 하지만, 고객의 특정 상황에 따른 과도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도관리국은 더 긴 기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섹션 5. 추가 서비스의 중단.**

고객이 한 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군데 장소에 대한 청구 요금이 미납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중단 조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객은 모든 위치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 다른 위치에 대한 청구 요금이 미납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중단 조항에 해당할 경우, 수도관리국은 해당 고객의 새로운 장소에 대한 수도 서비스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섹션 6. 조례 2022-01 폐지.**

조례 2022-01은 폐지되고 본 조례 2024-01로 완전히 대체됩니다.

**섹션 7.                    분리 가능.**

본 조례의 어떠한 섹션, 절 또는 조항이 무효하거나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하는 섹션, 절 또는 조항은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조례의 다른 모든 섹션이나 조항은 완전히 시행되고 유효한 것으로 유지됩니다. 수도관리국의 의도에 따라 무효하거나 위헌적인 것으로 선언된 해당 부분과는 무관하게 본 조례의 다른 모든 조항을 채택합니다.

**섹션 8.                    발효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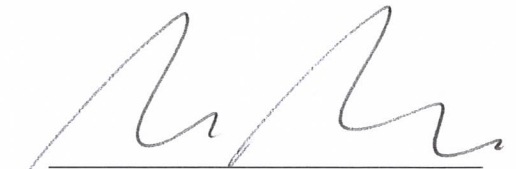
본 조례는 채택한지 30 일 이후에 완전히 시행되고 발효됩니다.

다음 이사회 투표 결과에 따라 2024 년 11 월 13 일에 본 조례를 채택합니다.

찬성표:        Directors Ranganathan, Glassman, Holtz and 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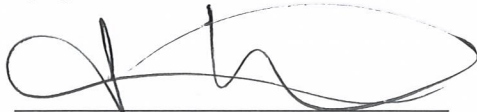
부결표:

기권:         Director Jordan



이사회 의장  
푸리시마 힐스(Purissima Hills) 수도  
관리국

증명:



수도관리국 국장